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779호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공 고

○ 공 고 제 8 6 2 호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공고	생 활 경 제 과	2
○ 공 고 제 8 6 5 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체 육 진 흥 과	11
○ 공 고 제 8 6 7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8
○ 공 고 제 8 7 2 호	간석4동 250-7번지 일원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공 원 녹 지 과	36
○ 공 고 제 8 7 6 호	전문건설업 청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 로 과	39

고 시

○ 고 시 제 5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41
○ 고 시 제 5 7 호	도로구간 폐지 고시	토 지 정 보 과	44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62호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공고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8조 및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과 관련하여 2023년 남동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1.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4. 24. ~ 2023.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금액 : 20,000천원
4. 지원대상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대상자로 사업승인을 받은 남동구 소재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소유자

- 단,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에 적합한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 가능

-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는 공용부지(옥상, 주차장 등) 설치 불가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 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나. 남동구 소재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하여 지원

다. 신축주택의 경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주택

에너지원	설치완료기간	비고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열	사업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 신축, 자연재해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1회 한하여 공사완료기한 연장 가능(신축 최대 90일, 그 외 30일)

5. 지원단가 및 비율

에너지원	설치종류	설치용량	보조금 지원금액		비고
			일반지역		
태양광	고정식	3.0kW	247천 원/kW	740천 원	전기
지 열	수직 밀폐형	10.5kW	206천 원/kW	2,160천 원	냉난방
		10.5kW초과~17.5kW이하	177천 원/kW	3,090천 원	"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이하	188천 원/㎡	1,310천 원	온수
		7㎡이하~14㎡이하	189천 원/㎡	2,640천 원	"
		14㎡이하~20㎡이하	163천 원/㎡	3,260천 원	"
	자연순환 온수기	6㎡급	1,010천 원/대	1,010천 원	"
연료전지	-	1kW이하	3,450천 원/kW	3,450천 원	전기온수

에너지원 (용량)	총 공사비	국 비	시 비	군.구비	자부담
태양광 (3kW)	5,966,000원 (100%)	2,808,000원 (47%)	920,000원 (15.5%)	740,000원 (12.5%)	1,498,000원 (25%)
태양열 (6㎡)	8,114,000원 (100%)	4,057,000원 (50%)	1,010,000원 (12.5%)	1,010,000원 (12.5%)	2,037,000원 (25%)
지 열 (17.5kW)	24,745,000원 (100%)	12,372,500원 (50%)	3,090,000원 (12.5%)	3,090,000원 (12.5%)	6,192,500원 (25%)
연료전지 (1kW)	27,672,000원 (100%)	13,836,000원 (50%)	3,450,000원 (12.5%)	3,450,000원 (12.5%)	6,936,000원 (25%)

※보조금 산정 값의 만단위 미만은 절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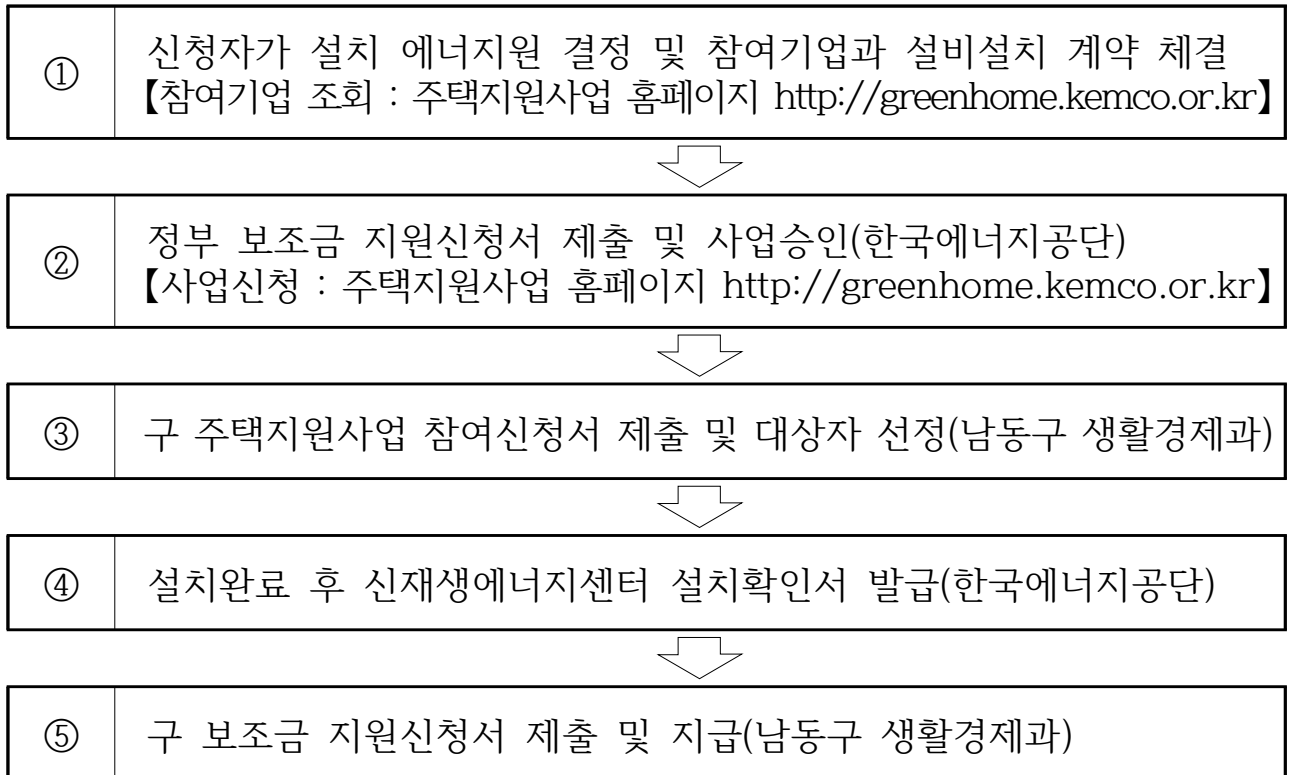
6. 시공기준

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2023. 4. 3.)호의 기준을 따름

7. 시공기한

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정한 설치완료 기한 내에 시공하여야 함.

8. 사업신청 절차



9. 사업참여 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4. 24. ~ 2023. 10. 31.(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다. 접 수 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7층)

라.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보완 완료시점을 접수일자로 인정
-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비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설비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한 참여기업 중에서 선택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서 대리 신청 가능하나 2개 사업 이상을 일괄 신청 시에는 신청자 자체 순번에 따라 접수

10.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기간 : 2023. 4. 24. ~ 2023. 11. 30.

- 신청기간 내 보조금 미신청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3. 11. 30.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제외(접수확인서 제출)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다. 접 수 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7층)

라. 기타사항 : 보조금은 설비 설치주택의 신청자(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의 규정을 따름

나. 자세한 사항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032-453-6122)로 문의

다. 남동구 주택지원사업 서식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
→ 소식과 알림 → 남동구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청자 (건물소유자)	연락주소		(설치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설치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 :		이동전화 :		
설비용량	태양광 : kW, 태양열 : m ² , 지열 : kW, 연료전지 kW				
설치기간	2023. . . ~ 2023. . .				
설치계약일	2023. . .				
사업비 (원)	총공사비	정부보조금	시보조금	군구보조금	자부담
참여기업			담당자		
			연락처		
활용목적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는 인천광역시에 귀속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 장소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 4.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홈페이지 화면캡처 인쇄)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6.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확인 후 (확인) 동일하게 작성

※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	(확인)
○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확인)
○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확인)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확인)	(확인)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확인)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천공 깊이 준수 등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3.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4.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2.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생년월일)		연락주소	(설치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설치주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		이동전화 :		
설비용량	태양광 : kW, 태양열 : m ² , 지열 : kW, 연료전지 kW				
시보조금	금 원				
사 업 비 (원)	총공사비	정부보조금	시보조금	군구보조금	자부담
설치기간	2023. . . ~ 2023. . .		설치확인일	2023. . .	
설치계약일					
참여기업			담당자및 연 락 처		
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는 인천광역시에 귀속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기업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사본. 1부.
※ 신축의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건물전경(전 . 후) 및 설비 설치사진 1부.
(태양광 : 모듈 및 인버터 전력량계 / 태양열 : 집열기 및 축열조 / 지열 : 히트펌프 및 기계실 내부, 천공작업사진 등)
3.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65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0.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기존 조례에 담지 못한 체육진흥 계획 수립 사항을 반영함
-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반영함
- 그 밖에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사항 신설 (안 제4조)
- 체육대회의 개최·운영 사항 신설 (안 제12조)
-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추가 (안 제17조, 제23조)
- 비밀유지 의무를 체육진흥협의회까지 확대 (안 제2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체육진흥과(만수동, 남동구청) ☎ 453-6272,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부터 제5조, 제8조, 제10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4조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2022.8.4. 일부개정)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 담지 못한 체육진흥 계획 수립 사항을 반영함
-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반영함
- 그 밖에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함

☐ 주요내용

-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사항 신설 (안 제4조)
- 체육대회의 개최·운영 사항 신설 (안 제12조)
-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추가 (안 제17조, 제23조)
- 비밀유지 의무를 체육진흥협의회까지 확대 (안 제2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부터 제5조, 제8조, 제10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2022.8.4. 일부개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과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육의 육성과 진흥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3. 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운용 지원 사업
4.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구청장은 우수 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지원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2.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3. 국내·외 대회 개최와 지원·참가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지원·참가
4.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 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제7조(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복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컨설팅 사업

4. 관련 체육단체의 육성과 진흥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나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영유아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유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체육대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단체에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체육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 ④ 상장은 남동구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 ⑤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남동구의 체육발전 또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비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사업
 2. 각종 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3. 국내·외 대회의 유치와 홍보
 4.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의 육성 또는 진흥 사업
 6.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내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등)을 개방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이나 경비
 7.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5조(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또는 활용
3. 공공체육시설 또는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위탁 관리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심의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과 남동구체육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장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제21조(체육진흥인사위원회) 체육 인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감독, 코치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을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한다.

제24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5조(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세부 사항은 제20조를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와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준용) 그 밖에 협의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직무, 운영,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現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을 물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19. 4. 19.)
5.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스포츠 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2. 2. 28)

12.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 및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7.2.)

13.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7.2.)

제2장 체육 육성 및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개정 2019. 6. 28.)
2.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3.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9.)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참가
4. 남동구청 꿈나무 스포츠단 운영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 ④ 삭제(삭제 2020.10.30.)

제5조 삭제 (2019. 4. 19.)

제5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8)

- ② 스포츠 복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2. 28)

1.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5.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제6조(직장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내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영유아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유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

제7조의3(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체육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현장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④ 상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⑤ 포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제9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 및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외 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의 육성 및 진흥 사업

6.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내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등)을 개방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

7.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2012. 2. 28)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1. 11. 9.) [제목 개정 2019. 6. 28., 2021. 11. 9.]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일부개정 2021. 11. 9.)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전문개정 2021. 11. 9.)
3. 삭제 (개정 2019. 6. 28., 삭제 2021. 11. 9.)
4. 공공체육시설 및 남동구 꿈나무 스포츠단의 위탁 관리에 관한 심의 (개정 2019. 6. 28., 2021. 11. 9.)
5. 삭제 (신설 2012. 2. 28., 삭제 2021. 11. 9.)
6.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심의 (개정 2012. 2. 28.)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1. 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체육회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6. 28., 전문개정 2021. 11. 9.)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14조 삭제 (2019. 6. 28.)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6. 28.)

제16조(간사 등) ①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삭제 (2019. 6. 28.)

④ 삭제 (2019. 6. 28.)

제17조 삭제(2019. 6. 28.)

제18조 삭제(2021. 11. 9.)

제4장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신설 2021. 11. 9.)

제19조(체육진흥인사위원회) 체육 인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 및 남동구 꿈나무 스포츠단의 감독, 코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67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4.20. ~ 2023.5.5.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29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

2023. 4. 20.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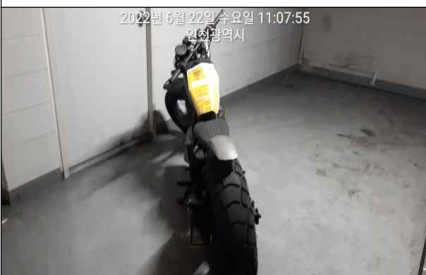
관 리 번 호	2022-002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동1125-10 엠타워2
	2022-0024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동1162-4, 부광빌라 나동 옆 담벼락
	2022-002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2022-0025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관 리 번 호	2022-0025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0025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0025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포구로10번길 9, 대양빌라 앞 이면도로
	2022-0027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0. ○ 견인일 : 2022.10.13.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말로39번길 50 공영주차장
	2022-0027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1. ○ 견인일 : 2022.10.13.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남로127, 더클래스2차 사유지주차장

관 리 번 호	2022-002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1. ○ 견인일 : 2022.10.13.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남촌동247-3 이면도로
	2022-0031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20. ○ 견인일 : 2022.11.09.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복개서로 55
	2022-0031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20. ○ 견인일 : 2022.11.09.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복개서로 55
	2022-0031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28. ○ 견인일 : 2022.11.25.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만수역 BYC 앞
	2022-0032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3. ○ 견인일 : 2022.11.25.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간석동 100-1 세종에이팩스

관 리 번 호	2022-0017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6.22. ○ 견인일 : 2022.09.23.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에코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024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8.26. ○ 견인일 : 2022.09.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장승남도33번길 21, 대동아파트 사유지
	2022-0024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09.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 111-348, 천우맨션 A동 담벼락
	2022-0024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09.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1128-1, 아트뷰타워 사유지 주차장
	2022-002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8. ○ 견인일 : 2022.11.1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도림동553-2 맞은편 인도

관 리 번 호	2022-0028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8. ○ 견인일 : 2022.11.1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도리미로8, 아이파크아파트 지하주차장 105동 104번 기둥 맞은편
	2022-0029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30. ○ 견인일 : 2022.11.1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로42 인도 위
	2022-003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06. ○ 견인일 : 2022.11.16.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201-147
	2022-0032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7. ○ 견인일 : 2022.11.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1112, 롯데맨션 앞 전봇대
	2022-0032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9. ○ 견인일 : 2022.11.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서로40, 스마일조명 앞 도로

관 리 번 호	2022-0032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8. ○ 견인일 : 2022.11.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은봉로255번길 5-15
	2022-0026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14. ○ 견인일 : 2022.12.2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구월테크노밸리 A동 지하1층
	2022-0034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30. ○ 견인일 : 2022.12.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지구대 주차장
	2022-001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6.22. ○ 견인일 : 2022.09.23.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에코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017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6.22. ○ 견인일 : 2022.09.23.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에코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 등록번호	차명	수취 인명	주소	발송 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24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125-10 엠타워	2022.10.04.	(주)한신편차	
2	2022-0024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162-4 부광빌라 나동 옆 담벼락	2022.10.04.	(주)한신편차	
3	2022-0025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2022.10.04.	(주)한신편차	
4	2022-0025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2022.10.04.	(주)한신편차	
5	2022-0025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10.04.	(주)한신편차	
6	2022-0025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10.04.	(주)한신편차	
7	2022-0025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포구로 10번길 9 대양빌라 앞 이면도로	2022.10.04.	(주)한신편차	
8	2022-0027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말로39번길 50 공영주차장	2022.10.13.	(주)한신편차	
9	2022-0027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남로127 더클래스2차 사유지주차장	2022.10.13.	(주)한신편차	
10	2022-0027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촌동247-3 이면도로	2022.10.13.	(주)한신편차	
11	2022-0031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복개서로 55	2022.11.09.	(주)한신편차	
12	2022-0031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복개서로 55	2022.11.09.	(주)한신편차	
13	2022-0031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역 byc 옆	2022.11.25.	(주)한신편차	
14	2022-0032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100-1 세종에이팩스	2022.11.25.	(주)한신편차	
15	2022-0017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एको중양로163, एको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9.23.	(주)인천폐차 사업소	
16	2022-0017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एको중양로163, एको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9.23.	(주)인천폐차 사업소	
17	2022-0017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एको중양로163, एको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9.23.	(주)인천폐차 사업소	
18	2022-0024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승남로33번길 21, 대동아파트 사유지	2022.09.30.	(주)인천폐차 사업소	
19	2022-0024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동 111-348, 천우맨션 A동 담벼락	2022.09.30.	(주)인천폐차 사업소	
20	2022-002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128-1, 아트뷰타워 사유지 주차장	2022.09.30.	(주)인천폐차 사업소	
21	2022-0028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도림동553-2 맞은편 인도	2022.11.18.	(주)인천폐차 사업소	
22	2022-0028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도림로8, 아이파크아파트 지하주차장 105동 104번 기둥 맞은편	2022.11.18.	(주)인천폐차 사업소	
23	2022-0029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로42 인도 위	2022.11.18.	(주)인천폐차 사업소	
24	2022-003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201-147	2022.11.16.	(주)인천폐차 사업소	
25	2022-0032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동1112, 롯데맨션 앞 전봇대	2022.11.30.	(주)인천폐차 사업소	
26	2022-0032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서로40, 스마일조명 앞 도로	2022.11.30.	(주)인천폐차 사업소	
27	2022-0032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255번길 5-15	2022.11.30.	(주)인천폐차 사업소	
28	2022-0026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구월테크노밸리 A동 지하1층	2022.12.21.	(주)인천폐차 사업소	
29	2022-003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지구대 주차장	2022.12.30.	(주)인천폐차 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72호

간석4동 250-7번지 일원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주민 편의시설(쉼터) 조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대상지 일원 노상주차장 폐지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 4. 21.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간석4동 250-7번지 일원 노상주차장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민 편의시설(쉼터) 조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쉼터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일 : 2023. 5. 13.(※시행일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폐지내용 : 1개소, 8면

연 번	행정동	위치	폐지면수	비 고
1	간석4동	간석동 250-7번지 일원	8	

다. 세부 위치도 : 별첨 자료 참고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3. 4. 21.(금) ~ 2023. 5. 12.(금) (21일간)

나.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3. 5. 12.(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1)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공원녹지과 녹지조경팀
- 2) 팩 스 : 032) 453-2849
- 3) 이 메 일 : heehyun3791@korea.kr
- 4) 문의사항 : 032) 453-286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간석4동 250-7번지 일원 노상주차장 폐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76호

전문건설업 청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절차로써 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1.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3. 4. 21. ~ 2023. 5. 10.(14일이상)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청문일시 및 장소
(주)태화 건설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39번길 72-20, 4층(논현동)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고양2019-02-01)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2023.5.11.(목) 14:00 남동구청 3층 도로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고양2019-09-01)			

4. 공고내용

가.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에 해당 되어,

나. 행정처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니, 청문에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위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남동구청 도로과(032-453-2713)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5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21.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23 (도림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60 (만수동)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23 (도림동)	2009.11.16.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4.2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762번길 123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3을 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48번길 38 (서창동)	2009.11.16.	독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4.2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독곡로48번길 38 기초구간에위치하여38을 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60 (만수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9-3 (만수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9-4 (만수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5-2 (만수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2-3 (만수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8-6 (만수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13-5 (만수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37번길 14 (논현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97 (구월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07 (구월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28번길 28-7 (간석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28번길 28-11 (간석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28번길 25 (간석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번길 170 (간석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51 (간석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8번길 23 (구월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92-19 (도림동)	2023.04.21.	건축물대장 말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57호

도로구간 폐지 고시

우리 구 고잔로62번길 도로구간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21.

남 동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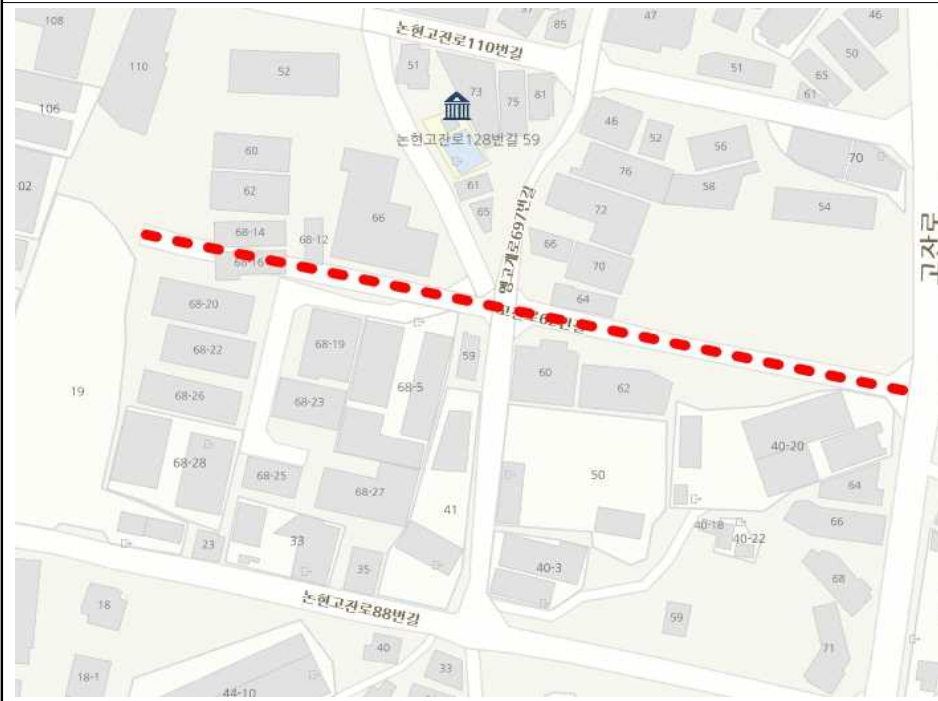
1. 고 시 일 : 2023. 4. 21.
2. 고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4. 도로구간 : 「고잔로62번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453-2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현황도면 1부.

도로구간 폐지 조서

순번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폐지(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1	폐지	변경 전	고잔로62번길 (주도로)	고잔동 368-3	고잔동 215	도면 참조	298	8	11	1	58	주소정보기본도 오류사항 정비	논현고잔동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주소정보기본도 (-- 폐지 대상)



항공사진

